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 第1次會議會議錄

1992. 3. 18

統 一 院



〈目 次〉

1. 一般事項 ..... 3

2. 會議錄 ..... 7



# 1. 一 般 事 項

가. 日 時 : 1992. 3. 18(水), 10 : 00~13 : 38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측지역 「平和의 집」

다. 參席者

구분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林東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정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위 원	金仁浩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宋榮大 (통일원 자문위원) 朴雲緒 (청와대 경제비서관) 柳得煥 (상공부 제1차관보) 辛鉉雄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朴秀蒼 (총리실 정책심의관)	김채성 (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이순 (문화예술부 국장) 류창석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정덕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송국 (로동청년사 부주필)
수행원	劉京相, 崔興植, 徐承一, 趙明均, 孫鍾洙, 李在浩	오풍근, 한영호, 김계익, 김창우, 김춘단, 신원철



---

---

# 會 議 錄

---

---





## 2. 會 議 錄

### <雙方 委員 入場 및 人事 交換>

남(임동원) : 자, 앉으시죠….

북측 여러분, 「평화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정우 위원장은 한달만에?

북(김정우) : 한달만에 다시 봅니다, 예.

남(임동원) :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별 일 없었죠?

북(김정우) : 한가했습니다.

남(임동원) : 해외 좀 그동안 나갔다 오셨어요?

북(김정우) : 예, 갔다온지 한 삼일…에, 좀 더 있으려 그러다가 임선생님 만나자고 그래서 이렇게 또 부랴부랴 왔습니다.

남(임동원) : 보고 싶었습니까?(웃음)

북(김정우) : 예, 보고 싶었습니다.(웃음)

남(임동원) : 굉장히 해외에서 활동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북(김정우) : 아, 내 직업이 그러니까. 북남 통일문제도 봐야 되지만 또 내 기본임무도 수행해야 되니까…

남(임동원) : 그렇죠.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북쪽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북(김정우) : 같습니다, 예.

남(임동원) :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판문점에 오

면서 길가에 들과 산을 보니까, 벌써 양지바른 곳에는 잔디가 파릇파릇 해졌어요.

북(김정우) : 예, 파릇파릇해요.

남(임동원) : 예, 그리고 나무에 물이 들어서 생기가 솟아요. 남북관계도 이제 47년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기 시작했는데, 화창한 봄을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 잘해 봅시다.

북(김정우) : 잘해 봅시다. 내일 모레면 춘분이 아납니까?

남(임동원) : 내일 모레 춘분이죠.

북(김정우) : 춘분이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과일나무도 옮겨 심고 뽕나무도 옮겨 심고 병아리도 깨운다는 기억이 있었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가 협력·교류분과 1차회의를 평화의 집에서 하는데, 아주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1차회의는 평화의 집에서 하고, 다음 2차회의는 통일각에서 하니까 평화통일... 예, 평화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분과위원회 1차회의다, 이렇게 아주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임동원) : 아주 대단히 의미해석을 잘 하셨네, 동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로 우리 위원들 소개할까요?

북(김정우) : 예, 좀 해주십시오. 다 처음보는 얼굴들입니다.

남(임동원) : 제가 먼저 우리측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오른편에 있는 분이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계시는 김인호 위원입니다.

그 오른쪽이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비서관인 박운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끝에 계시는 분이 문화부의 문화정책국장인 신현웅 위원

입니다. 그리고 제 원편에 있는 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  
습니다만, 통일원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송영대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원편이 상공부, 우리측 상공부는 상업, 공업, 무역을 총괄하  
는 정부부서인데, 상공부의 차관보인 유득환 위원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계시는 분이 국무총리실의 정책심의관으로 계시는 박수창 위원입  
니다.

북(김정우) : 감사합니다. 저 김인호 선생은 지난해 10월 18일 우리 평양에  
서 UNDP 주관하에 동북아세아지역 조정자회의 할 때 와서 연회장에서  
내가 만나서 낯이 익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은 에... 송영대 선생입니다. 옛날부터 적십자회담을 많이 주관해서, 많  
은 노력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처음 이제 상면하  
는데, 우리 회의를 좀 잘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측  
위원들 좀 소개해 드릴까요?

남(임동원) : 그래요, 예.

북(김정우) : 예, 우측에 앉아 있는 분이 김채성 정무원 사무국 부장입니  
다. 그 다음에, 다음에 앉아 있는 분이 김승국 로동청년사 부주필. 다음  
에 앉아 있는 분이 김이순 동무, 문화예술부 국장. 좌측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좌측에 앉아 있는 분이 손종철 동무,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85년  
도 경제협력..., 경제회담 때 나와서 같이...

그 다음에 앉아 있는 분이 정덕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그 다음 앉아 있는 분이 류창석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입니다.

남(임동원) : 반갑습니다. 북측 위원들중에 몇 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위원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웃음)

우리 김채성 위원께서도 그렇고, 손종철 위원께서도 그렇고, 또 정덕기 위원도 그렇고, 아마 남북회담에 여러번 참석하셨죠?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우리 거래의 장래문제를 논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말이죠.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김정우) : 그래요.

남(임동원) : 뭐, 정치분과위원회나 군사분과위원회와는 달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공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동의한다면...

북(김정우) : 예, 나도 반대 없습니다. 협력·교류는 공개로 해봅시다, 한번.

남(임동원) : 그럼시다. 아주 대단히 좋을 겁니다.(웃음)

북(김정우) : 다른 분과위원회 한 것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없죠.

남(임동원) : 그렇게 할 필요없죠. 아주 처음부터 잘 진행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럼 공개로 하도록 하고..., 회의를 시작하죠.

북(김정우) : 합시다.

남(임동원) :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관례상 사회를 내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북(김정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임동원) :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관례에 따라 주최측인 내가 먼저 기초발언을 하고, 이어서 귀측이 첫발언을 한 다음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북(김정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임동원) : 예, 그러면 제가 먼저 기초발언을 하겠습니다….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 <南側 基調發言>

김정우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 북(김정우) : 가만, 미안하지만 발언원고를 주지 않겠습니까? —

— 남(임동원) : 제가 우리 안을 그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

오늘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나는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화의 집」에 오신 북측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북 쌍방은 지난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이행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첫회의를 갖게된 것입니다.

지금 온 거래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첫 결실인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더불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우리 거래는, 이제 단절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끊어진 혈맥을 이어 분단의 고통을 덜고, 남북관계를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온 거래의 삶의 질을 높이며, 왕래와 협력을 통해 단일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등,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거는 내외의 기대는 자못 크며, 우리들의 임무와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쌍방 위원들은 거래의 이같은 부푼 기대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잘 운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내부문제에 간

섭하지 않으며,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남과 북이 화해를 지향하는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간의 오랜 적대와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통일로 나가자는 민족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비축소를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이 땅의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정착시켜 나갈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와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의 실시, 그리고 교통·체신망 연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공존공영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귀측도 알다시피, 남북 사이에는 오랜 대결과 단절로 인해 오해와 불신이 깊고, 민족의 동질성마저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간에 사람과 물자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실시되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적 유대감과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의 혈육상봉이 이루어지면 혈연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물자 교역이나 합작투자 등이 활성화 되면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끊어진

도로와 전화가 연결되고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면 사회문화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것처럼 바라던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드높일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남북교류·협력이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교류·협력 사업의 능률적인 협의·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 쌍방은 호혜적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이익과 입장만을 앞세우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교류·협력은 남북화해와 공동체 건설에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은 모름지기 상호주의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남북 쌍방은 통일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협력이 아니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이라는 특수성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내부 교류라는 입장에서, 그것이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 쌍방 당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질서있고 안정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쌍방 당국간에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그것을 토대로 쌍방의 법질서 체계하에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구성원들은 남북당국의 주선과 지원·보장하에,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일방이 상대측 당국을 제쳐놓고, 소위 「각계 각종 인사들」을 상대로 접촉, 왕래 등을 시도한다면, 남북화해를 저해함은 물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남북 쌍방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부터 우선 합의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는 그 성격으로 보아서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일, 서로 필요로 하고 즉각 실천이 가능한 일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안의 완급과 중요도를 가려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별합의, 즉시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부속합의서 작성에 있어, 선언적·추상적 내용만을 나열해서는 안되며, 실천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천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해당부문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서에 충실하게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속합의서를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작성할 것인가?

첫째, 부속합의서를 몇개로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측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로부터 제21조까지는 경제, 사회문화, 인도, 통행·통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그 분야가 다양하고 방대하며, 성격상 타조항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그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되, 타조항과 연관성이 있는 조항들의 사업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중복을 피하면서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18조인 이산가족 재회와 인도적 문제해결 조항은 그 성격상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독립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9조인 철도, 도로, 해로, 항로의 연결과 제20조인 우편·전기통신교류,

그리고 제17조인 자유왕래와 접촉은 사업성격이나 기능면에서 통행·통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인 경제교류·협력과 제16조중 과학·기술, 보건, 환경, 그리고 제21조중 경제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은 모두 경제교류·협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제16조중 교육, 문학·예술, 체육, 출판·보도와 제21조중 문화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은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7개 조항을 그 성격상 ① 이산가족분야, ② 통행·통신분야, ③ 경제교류·협력분야, ④ 사회문화분야 등, 4개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4개의 부속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부속합의서의 내용 구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입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해당조항의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천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언적이거나 방향적인 것만 나열한다면, 이것은 부속합의서 채택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몇개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문별 공동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부속합의서의 이행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만 그 이행과 관련된 극히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실천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부속합의서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명시할 실천과제는 참으로 방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는 실천기구들이 탄생되어야 함은 물론, 그 기능 역시 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들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목적이 부속합의서의 이행에 있는 만큼, 공동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부속합의서와 그 숫자를 맞추어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부문별 공동위원회 문제에 관해서도 인도,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의 4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4개의 부속합의서와 4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이,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부문의 제반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의·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4개의 부속합의서(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와 관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 여기 부속합의서(안)을 넘겨드리겠습니다.… 3부 …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이하 「이산가족」이라고 한다)들에게 조속히 재회의 길을 마련해 주고 기타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산가족들의 범위는, 가족의 경우는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고, 친척의 경우는 방계에서 8촌, 처가와 외가로는 4촌으로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적용한다.

-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가족찾기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한다
- ② 이산가족들은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자기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직접 알아낸다
- ③ 이산가족들은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가족과 친척의 주소·생사를 알아낸다.
- ④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을 통해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줄 수 있다.

제 3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① 서신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한다.
- ② 서신거래는 판문점에서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 교환실을 이용하고, 주1회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교환횟수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이산가족들은 다른 남북왕래자들을 통해 서면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소식을 전달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다음과 같은 목적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① 왕래의 목적은 이산가족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며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고 상봉하며, 재결합 문제를 협의·실현시키는데 둔다.

②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이산가족은, 자기측 당국이 상대지역 방문을 허가하는 증명서와, 방문지역의 당국이 발행한 방문허가증명서를 소지한다.

③ 남과 북은 왕래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상봉 및 방문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현시킨다.

① 상봉장소는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이산가족 면회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판문점 이외의 장소에도 면회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면회자는 생사·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로 하고, 면회는 월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면회자 명단은 면회일 1개월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③ 방문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실시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현시킨다.

① 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친척·중개자 등을 내세워 재결합 문제를 서로 협의한다.

② 남과 북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이 확인될 경우,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돕는다.

①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구호지원하는 문제

②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적인 문제

제 8 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 및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인도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또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 제19조, 제20조와 관련, 「남북 사이의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 부속합의서(안)입니다. —

### 남북 사이의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 따라,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하며, 남북 사이의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통 행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을 왕래하는 자는 자기측 당국이 상대지역 방문을 허가하는 증명서와 방문지역의 당국이 발행한 방문허가증명서를 소지한다.

제 3 조 남과 북의 주민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주민은 체류사증으로 자기측 당국이 발행한 방문허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 4 조 남과 북은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로, 해로, 항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한다. 육로의 경우 우선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한다.

제 5 조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자는 방문하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과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 및 현금을 휴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물품과 선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제 6 조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 지역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상대측 교통수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 조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는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른다.

제 8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자에게, 허가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제10조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의 출입절차 및 교통수단별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존중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통행로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필요한 기술협력을 제공한다.

## 제 2 장 통 신

제12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류를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이 교류할 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두 종류로 하며, 전기통신의 종류는 전신·전화 등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상대측의 주민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수집하여 상대측에 전달하며, 우편물을 전달받은 측은 자기측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제15조 남북 사이의 우편물의 교환장소는 판문점에 설치 운영되는 남북 연락사무소의 우편물 교환실로 하고, 주1회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교환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남과 북 사이의 전기통신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하며, 전화통화는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전화교환실을 통하여 연결하고 이를 점차 자동화한다.

제17조 남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 요금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19조 남과 북은 남북 주민이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위해 상대측 주민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존중한다.

### 제 3 장 이 행 기 구 및 수 정 · 발 효

제21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남북 사이의 통행과 통신에 관한 제반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통행·통신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2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3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이하 서명권자의 명단은 전번과 같기 때문에 읽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 16조, 제21조와 관련,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 부속합의서(안)을 드리겠습니다. -

##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호 보완과 호혜의 원칙에서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관광, 과학·기술, 보건, 환경 등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및 대외공동 진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물자교류

제 1 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물자교류를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남북 사이의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호 보완의 원칙과 쌍방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교류 대상 품목과 교류규모를 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4 조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물자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 추진하며, 교류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6 조 교류물자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제 2 장 경제협력사업

제 7 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업, 광업, 농업, 어업, 건설, 운수, 전력, 통신,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공동개발,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과 경제분야에서의 대외공동진출 및 대외협력 사업을 지원·보장한다

제 8 조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9 조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당해 사업에 대해 각기 자기측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시행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 이행에 따라, 자기측 지역에서 이루어진 상대측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투자보장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 3 장 과학·기술, 보건, 환경분야 교류·협력

제 11 조 남과 북은 정보자료의 교환, 대학·연구기관·개인간 공동연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전문가의 상호교류 등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각종 질병의 예방·퇴치와 의학·약학기술,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며, 공동연구, 전문가의 교류 및 식품·

의약품 교류를 통한 보건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관한 자료교환과 전문가의 교류 및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환경보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환경보전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보건, 환경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 대외에서의 협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4장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지원

제17조 남과 북은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제18조 남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쌍방으로부터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제20조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교류·협력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사업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통계 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 등을 상호 교환하며, 교류·협력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 관련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며,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 제 5 장 이행기구 및 수정·발효

제24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제반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서명권자 이름 생략...

또한 나는 제16조와 제21조와 관련하여,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 합의서(안)을 드리겠습니다. —

##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문학·예술, 체육,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대외공동진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교 육

제 1 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학술과 학교교육, 직업교육, 사회교육 등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국토순례, 수학여행단 교환 등 남북학생들간의 교육과 친선을 위한 상호교류를 실시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교육시찰, 교육연구행사, 교원단체간의 교류 등 남북 교직원들간의 상호교류를 실시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상호 교환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자들간의 공동연구와 학술조사, 편찬사업을 실시하고 학술목적의 공동행사를 장려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교육자료 및 기자재를 상호 교류한다.

### 제 2 장 문 학·예 술

제 7 조 남과 북은 언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영상·음반, 건축,



문화재, 무대예술, 전통생활문화, 종교 등 문화·예술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문화·예술분야의 자료교환과 문화·예술단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간의 교류 및 작가, 예술인, 학자, 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언어, 문화재 등 민족 문화유산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답사, 연구, 학술행사 및 편찬사업을 장려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자료와 경험을 상호 교환하며, 각자가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물의 교환전시를 실시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남북 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며 영화 교환상영, 예술작품의 교환전시를 실시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국제행사 등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해외동포에게 민족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3 장 체 육

제13조 남과 북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체육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각 종목별 친선경기를 개최하며, 쌍방이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에 상호 초청·참관 및 대표단 파견 등을 실시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간 체육분야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선수, 체육지도자의 교류와 선수단 합동훈련, 상호 전

지훈련 등을 통한 남북 체육인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와 국제대회 공동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남북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보·자료교환과 청소년단체,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들간의 교류를 실시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남북 청소년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개최하는 청소년행사에 상호 초청·참관을 실시하고, 남북청소년이 함께 참가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제 4 장 출판·보도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체육 등 각 분야 방송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방송과 공동 제작을 실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언론인의 상호교류를 실시하며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국제행사에 남북 공동취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출판·보도자료의 목록을 작성·교환하며 도서전시회 공동개최 등을 통해 출판·보도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제25조 남과 북은 출판·보도에 관한 자료와 경험을 상호 교환하며, 학자, 전문가 교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제 5 장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지원

제26조 남과 북은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호 보호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원활한 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자료교환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 6 장 이행기구 및 수정·발효

제28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3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서명권자 명부 생략합니다.

또한 나는 제22조와 관련, 「남북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 합의서(안)입니다. —

## 남북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인도공동위원회, 남북통행·통신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공동위원회는 쌍방 각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쌍방이 합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급(부장급) 또는 차관급(부부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각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 각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공동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속합의서들에 따라 해당부문의 교류·협력을 협의 실천한다.
- ② 각 공동위원회는 해당 부문 부속합의서들의 실천방안을 협의한데 따라 사안별로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공동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제반문제를 협의·조정한다.

④ 각 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각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각 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5일 이내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④ 각 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당사자,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각 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북측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북 사이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한 설계도 작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나는 이 작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거래의 기대와 축복속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쌍방이 인도적 문제에 관한 협의부터 먼저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의지를 상징적으로 7천만 거래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산가족문제가 남북화해의 상징이고 남북관계개선의 징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할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게 된다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에 대한 내외의 신뢰가 증진됨은 물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진입을 우리 거래 모두가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토의가 우선 이루어지면서,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문제 등도 함께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인도적 문제가 안고 있는 절박성을 고려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조속한 실현을 바라고 있는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남북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북고령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남과 북에는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오랜 세월 그리운 혈육과 만날 날만을 기다리다가,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은 생전에 고향을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성묘하며, 헤어진 혈육들과 재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쌍방 당국은 이와 같은 절박하고 기본적인 인간적 요구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실현될 경우, 그것은 인도적 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됨은 물론,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은 겨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고령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명 칭 : 「남북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으로 한다.
- 구성 및 규모 : 고향방문단, 취재기자, 지원인원으로 구성하며 쌍방  
각기 총규모 400명 내지 500명으로 한다.
- 방문시기 및 기간 : 민족명절인 금년 단오절(6월 5일)을 전후하여 5  
박 6일간으로 한다.
- 방문지 : 이산가족들의 고향으로 한다.
- 방문단 교환방법 : 동시교환 방법으로 한다.
- 기 타 : 상봉주선 및 범위, 왕래절차, 명단통보, 신변안전보장 등 제  
반문제는 1985년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교환  
시의 선례를 준용한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오늘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제1차회의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우리에게 부과된 문제들  
을 성공적으로 협의·해결함으로써 민족화해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에 기  
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김정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문건들을 제출하면  
서 읽으시느라고. 제가 이제 발언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 선생이 발언한  
부분에서 내가 좀 물어 볼 문제를 한 두가지 물어 보고, 그 다음에 기본  
발언하고, 선생의 발언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겠습



니까?

남(임동원) : 좋습니다.

북(김정우) : 우선 우리 협력·교류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원칙에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은 명백하지요?

남(임동원) : 그렇습니다.

북(김정우) : 예,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 하게 되면 부속합의서가 꼭 채택되어야 한다. 이것도 명백하고요?

남(임동원) : 그것이 원칙이지요.

북(김정우) : 글썄 그러니까, 공동위원회가 구성·운영돼서 작위를 시작하게 되면 부속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

남(임동원) : 그것이 원칙이지요.

북(김정우) : 음, 원칙이지요?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에는 실천대책의 원칙을 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 이해가 됩니까? 공동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부속합의서에는 공동위원회가 작위를 할 수 있도록끔 실천대책에 대한 원칙, 기본원칙을 여기다가 지적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남(임동원) : 거기에는 서로 이해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칙이 기본합의서에서 제시했던 선언적이고 방향적이고 강령적인 정도를 약간 보완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부속합의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대책과 관련한 주요 요소들이 망라되고 방법과 수단이 망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토대로 공동위원회에서 세부합의서 시행과 관련된 더욱 세부적인 합의서를 만들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견해입니다.

북(김정우)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본발언하고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임동원) : 그렇게 하십시오.

북(김정우) :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발언 원고를 그대로 귀측에 넘기고 이 원고에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있으니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임동원)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김정우) : 귀측에서도 기본발언문을 한 부를 주십시오.

남(임동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김정우) : 쌍방이 그래야 이제...

남(임동원) :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언문. 이거 한 부입니까?... 한 세부 드리세요.

북(김정우) : 세부 필요하다면 우리도 세부 드리고...

남(임동원) : 한 세부 주시면 좋겠고.

북(김정우) : 두 부 더 드려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남(임동원) : 그러시죠.

## <北側 基調發言>

립동원위원장과 남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겨레가 90년대 통일에 대한 신심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시기에 북남고위급회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한달전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된 데 뒤이어 정치, 군사분과위원회와 함께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처럼 첫회의를 열게 된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들을 실천해나가려는 우리들의 의지를 겨레앞에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또 하나의 의의있는 일로 됩니다.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화해와 불가침을 실현하는 문제와 함께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통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필수불가결의 중요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통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줄을 나눈 하나의 겨레인 우리 민족은 외세가 강요한 분렬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들이 서로 갈라지고 도로와 철길, 해로들이 끊기우고 경제분야에서의 모든 련계가 차단된 채 본의 아니게 우열과 승부를 겨루고 대결하면서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대결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저저마다 자기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오늘날 반세기가 가까워오도록 우리 민족의 통일은 고사하고 격폐상태를 끝장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의 실현은 외세가 끊어 놓은 민족의 혈맥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다시 잇고 분렬로 하여 쌓이고 쌓인 동족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의 실현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동족끼리 서로 유무상통하며 힘을 합쳐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갈 넓은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발효된 것은 대결과 단절로 지속되어 온 불행한 민족사와 결별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중요한 합의서들이 발효된 것은 그 자체로서도 물론 귀중한 것이고 사변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실천은 화해와 평화,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서 보다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실천에 옮겨져 은을 내지 못하면 많은 힘을 들여 탄생시킨 좋은 합의서들이 빈종이장으로 되고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북남사이에 훌륭한 합의서들이 발효된데 이어 그 리행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합의서리행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되게 되었습니다.

북남합의서 채택과 함께 협력, 교류분과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합의는 있었어도 실천이 없었고 부분적인 실천이 있었어도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와 결별하고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정상화하며 협력, 교류사업들을 활발히 벌려나갈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 놓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오늘의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첫회의가 개막된 사실을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으로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북남사이에 경제와 문화 등 각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게 된 것은 합의와 실천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고 협력과 교류를 보다 확고한 기초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는 뜻깊은 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90년대는 통일의 년대입니다.

90년대의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의지를 안고 떨쳐나선 온 겨레는 지금 우리 쌍방당국이 북남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하여 통일을 위한 길에서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회담벽두부터 합의서리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부 세력들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운운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동족의 말보다 남의 말을 더 믿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좋은 합의를 탄생시키고도 그 리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대신 천만부당한 전제조건을 들고나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류보하겠다》고 하면서 회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3일에 열렸던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와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가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회담전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의 길을 열어 민족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거래의 념원에 부응하려면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는 정치, 군사분과위원회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문제, 무근거한 문제들을 가지고 회담에 복잡성을 조성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쌍방이 합의한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은 앞으로 겨우 한달 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토의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앞에 지닌 무거운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서고 있는 이 긴박하고도 중대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쌍방이 다같이 옳은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문제토의를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첫째로, 상정된 문제를 협의해결함에 있어서 민족자주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의하게 되는 문제들은 성격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철저히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따라서 반드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민족외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구속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그 어떤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제해결의 진전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로는 자주성이요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요 하면서도 실천에서는 주권이 없이 다른 사람의 품에 놀게 된다면 우리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없습니다.

민족내부문제는 동족을 믿고 동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자주적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협력, 교류분야에서의 합의사항들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리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토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기된 문제들을 토의해결하는데서 진심으로 민족공동의 리익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옳은 립장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의 핏줄을 타고난 동족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을 이룩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가야 할 단일민족입니다.

우리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시하는 목적은 단순히 경제거래나 하고 문화교류를 하면서 경제적 리득이나 얻고 예술감상이나 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다름아닌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근 반세기동안이나 서로 갈라져 다른 길을 걸어온 것으로 하여 생긴 민족의 비극사를 더는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그것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쌍방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포애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상정된 모든 문제들을 토의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일방도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 발전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 누구를 《개방》으로 유도하려 한다거나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쌍방위원들은 다같이 성실하고 진실한 립장, 다시 말하여 일방의 리익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립장에서 힘과 지혜를 합쳐 분과위원회 앞에 부과된 과업을 해



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정신을 널리 발양하는 것입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데서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여서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원래 대화자체가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대화에서 서로 양보함이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으며 호혜의 정신을 떠나서는 진정한 협력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더우기 북남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제도가 존재하고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협력, 교류문제토의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와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계획경제와 남의 상품생산경제는 그 목적과 경영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문학예술도 그 사상적 기초가 다르므로 사상주제적 내용과 형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북남합의서의 협력, 교류부분에 관한 합의를 리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데서 여러가지 의견상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수록 쌍방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쌍방이 다같이 이상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상정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해나간다면 훌륭한 합의를 이루어 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부터 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발효된 북남합의서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는 북남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부분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는 이 합의사항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속합의서는 5월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쌍방총리들이 서명하여 발효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부속합의서에 북남합의서 협력, 교류부문을 리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물론 부속합의서에 협력, 교류부문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책까지 밝히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오게 될 실행기구인 공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문제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속합의서를 너무 세부화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알맞춤하게 작성한 우리

의 부속합의서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 ①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석탄, 유색금속, 철광석, 희유금속광물을 비롯한 자연부원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 ②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 등 경제협력과 물자거래를 진행하는데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③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대상과 물자거래품목 선정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쌍방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토의하여 정한다.
- ④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형식과 규모, 물자거래의 량과 가격, 지

불조건 등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서와 계약서에 따라 정한다.

- ⑤ 북과 남은 호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상품 대 상품, 원료 대 원료의 교환방식으로 물자거래를 실현한다.
- ⑥ 북과 남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거래에서 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 거래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취할 수 있다.
- ⑦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물자거래에서 청산결제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 은행들을 정하며 결제업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지정된 은행들이 토의하여 해결한다.
- ⑧ 북과 남의 결제화폐는 스위스프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전환성 화폐로도 할 수 있다.
- ⑨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물자거래에서 관세를 면제하며 그 밖의 특혜 조건에 대하여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 ⑩ 경제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들로서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된다.

제 2 조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교류를 실현한다.

- ①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정보를 호상 교환한다.

- ②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현한다.
- ④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역사유물을 비롯한 민족유산을 발굴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 3 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북과 남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정치인, 경제인, 학자, 언론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인사래왕은 우선 판문점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통로(국제항로포함)로 하도록 하며 그 래왕절차는 따로 정한다.
- ③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한다.
- ④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
- ⑤ 북과 남은 래왕자들이 상대측 법과 사회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자유롭게 래왕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제 4 조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래왕과 상

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문제와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쌍방적십자단체들이 주관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북과 남은 쌍방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조건을 보장한다

제 5 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북과 남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경제협력과 상품교류 및 인사래왕의 규모에 맞게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 ③ 교통로가 연결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물자교류와 인사래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 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제 6 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쌍방의 우편물들을 관문점을 통하여 교환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강구한다.
- ② 북과 남은 우편과 통신 보장에서 당면하여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리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제 7 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하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기구들에 공동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국제회의, 국제기구,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8 조 북과 남은 북남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제 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우리 부속합의서안은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서를 구체화하면서도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조금만 협의하면 인차 리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합의도 빨리 할 수 있고 실천에서도 애로를 느끼지 않게 만들어진 합리적인 안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둘째로,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제입니다.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몇개로 구성, 운영하겠는가 하는 것과 공동위원회를 몇명으로 구성하겠는가 하는 것만 토의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로서는 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경제와 비경제부분으로 나누어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로 구성운영하며 각 공동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작성한 우리의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사이의 경제와 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부문과 사회문화부문(비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로 약칭)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사회문화공동위원회로 약칭)를 구성한다.
- ②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 ③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위원장은 부장 또는 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 3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한다.
- ② 부속합의서이외에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행대책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는 각기 1년에 3회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의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는 판문점, 평양, 서울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남측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한 민 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국무총리 정 원 식

우리의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은 북남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다같이 실속있게 협의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지금 온 거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안은 임무는 중대하며 우리에게 대한 거래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협력, 교류의 실현을 위해 드디어 한배를 타고 부두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일단 손을 맞잡고 일을 시작한 이상 주춤거리거나 멈추어서지 말고 전진적인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과위원회사업의 성과적 진전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할 것이며 민족공동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도 분과위원회사업을 훌륭히 결속하여 온 거래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안겨주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보조를 같이 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임동원) : 수고하셨습니다.

북(김정우) : 예,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선생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선생이 기본발언 서두 부분에서 당국이 민간부분의 교류협력까지도 주관해서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법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그와 같은 질서 있는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협력·교류분과위원회의 사업 범위로 놓고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문화예술로부터 출발해서 체육, 출판·보도, 그 다음에 경제부문, 인도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놓고 보면 지난 시기에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하던 내용들도 있고, 또 앞으로 경제부분을 놓고 보아도... 다 당국 주도하에 창구일원화 형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모든 사람들이 오가고,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의 의견은, 민간부분의 접촉과 교류도 활성화하는 원칙에서 우리가 토론해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건별로 합의하면서 하자, 선언적으로 해선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시작하

는 초시기부터 합의서 부문의 전반을 리행할 결심을 하셔야지, 어느 하나씩 똑똑 뜯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모처럼 마련한 기본합의서의 전반부분을 리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협력·교류 분과위원회는 제3장 북남협력·교류 이 부분에서 제기된 9개의 조항에서 실천적으로 집행해야 할 7개 조항 전체를 집행하는 원칙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부속합의서를 선언적으로 하지 말자, 실천적 의의가 있게 하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를 선언적으로 안한다는 미명하에 세말적으로 해 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할 기능까지 부속합의서에 담으면,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리행기구인 공동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임선생과 6차회담이 끝난 다음에 개성으로 가는 기차간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공동위원회, 실천기구인 공동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일러주는 것으로서 자기 일을 끝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동위원회가 발족해도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말적인 것까지 다루어서 어느 것이 공동위원회가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부속합의서가 할 것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계선이 없이 되어선 안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 4개를 이제 제출하셨는데,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인도적 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서(안), 그 다음에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관련한 안, 그 다음에 사회문화, 경제분야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속합의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부속합의서를 이렇게 많이 제출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합의를 본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장 제2조에 모순되기 때문에, 부속합의서는 원칙을 다 담아 하되 이걸 하나로 몰아서 한 개로 만들자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기합니다.

다음 공동위원회 문제입니다. 공동위원회를 우리 의견은 2개로 하자는 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개로 하자는 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동위원회를 많이 늘어놓으면 사업이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타결이 힘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서는 사회구조를 대체로 분할해 놓고 보며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4개부문으로 가르게 되면 다 포괄됩니다. 정치, 군사는 이미 다른데서 하는 거고, 우리 협력, 교류는 나머지 두개에 경제와 사회문화, 이렇게 가르면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임선생이 제출한 공동위원회 문건과 합의서 문건에서 특히 공동위원회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공동위원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조선공동위원회, 인도공동위원회 하는 것 같고, 제목도 이게 지금... 좀 듣는데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적인 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해오던 적십자단체에서 하면 되니까, 이것은 적십자단체에다가 위임하고, 그 다음에 통행·통신공동위원회, 이것은 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서 취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연관성도 있고, 여기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두개로 하자는 제기를 합니다.

다음, 리산가족재회문제 이걸... 부속합의서를 토의하면서 채택되기 이전이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철저히 준해서, 부속합의서도 발효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도 발족돼야 자기일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속합의서가 꼭 채택되어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 이 문제를 우리도 하자는 것이고, 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적십자단체들에서 토론하도록끔 하자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려자 방문문제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임선생의 기본발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공동위원회는 두개로,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는 이미 합의한대로 하나로, 하나로 하되 원칙을 담아서 하나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임선생이 말씀을 좀 하십시오.

남(임동원) :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귀측의 발언을 듣고 또 귀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안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보고 듣고 할 때, 내용면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 하고 유사한 점도 적지 아니 많고, 특히 공동위원회 운영·구성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도 적지 아니 있으며, 또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중에 빠진 것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의견과 입장이 처음서부터 일치된다는 것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치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더군다나 경제면에서 볼 때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고 귀측은 계획경제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마는, 어떻게 처음부터 의사가 꼭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속에서 합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 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귀측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제시한 것과 우리측이 제시한 것을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우리는 부속합의서를 4개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귀측에서는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로 하면 좋겠다 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 포괄하는 범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 위주냐, 실천적 대책 위주냐?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도 다시 세칙을 마련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쉽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합치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발견한 것은 귀측의 부속합의서는 다해서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4개 부속합의서안은 총 89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발효조항 같은 것은 같다고 보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약 80개 조항이고 귀측은 10개 조항입니다. 또 동그라미 세항만 따져보니까 한 30개 채 못되는 것 같은데 30개 대 80개 조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어떤 조항은 2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시다마는, 대충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의서가 몇개다 라는 문제에 못지 않게 내용이 들어갈 곳에 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의 내용까지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가 앞으로 의견의 일치를 좀 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서로 제기한 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하되, 상대측이 왜 그런 안을 제시하였는가?하는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합치점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수를 귀측은 경제, 비경제 2개로 하자, 우리는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개로 하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속합의서가 몇개인가 하는 것과 일치가 되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마는, 설사 부속합의서 숫자가 공동위원회 숫자와 꼭 같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협의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회의에서 자기것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연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대표들이 「초행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던데,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 서로 초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구하면서 가

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도 경제분야 같은 것은 우리측이 제시한 안이, 다른 것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제분야는 우리측에서 제기한 안을 귀측에서 상당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귀측에서 시간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7차회담 이전에 부속합의서를 모두 합의를 꼭 보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합의서 제22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속합의서를 그때까지 다, 꼭 모든 부속합의서를 합의하여야 되느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마는, 그것은 남북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원칙적인 문제만 나열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들 때는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서, 이 문제는 서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 이걸 남북간에 합의만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느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는가?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4개의 부속문서를 내놨다고 문서가 많아서, 조항수가 많아서 그 시간 내에 합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속합의서(안)들이 4개가 되건, 몇개가 되건 하는 것은 아직도 논의의 가능성이 있겠지마는, 그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 접촉을, 조속히 해서 시간내에,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귀측에서 지금 첫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김위원장께서 우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몇가지 제시한 문제로, 모든 것을 당국이 주관해서 되겠느냐?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제시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국이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만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운동경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운동경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북당국간에 그 규정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마음대로 뛰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누가 만드느냐? 당국간에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부문에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남측은 자유민주주의체제고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본적인 규정만 만들어 주고, 그 규정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건별합의, 즉각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귀측에서 지난번 6차 회담에서 발언문을 통해서 나왔던 「일괄합의, 동시실천」,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석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합의하고 한꺼번에 실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까도 제가 기초발언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것은 서로가 시급하고 빨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다고 봐서 빨리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호간에 잘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47년 동안 갈라져서 살았고 서로 불신과 대결 속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일괄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예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마는 우리의 지난날의 남북고위급회담의 역사로 봐서, 그것은 번지르한 말에 불과하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건별로 합의를 해서 먼저 실천한들 무슨 상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물론 귀측에서는 지난번 연설 때, 기초연설 때 「일괄합의, 동시실천」을 주장하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측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며는, 북측이 꼭 필요로하는 것만 예외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

다. 서로가 불신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  
쥬.

그래서 이것은 「일괄합의, 동시실천」을 주장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것은 「건별합의, 즉각실천」 원칙이 상호 유익할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기능과 공동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분과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만들고, 또 그리고 공동위  
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를 작성하면, 그것으로 분과위원회의 기  
능이 끝나는 것으로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남북간에 그  
런 합의가 있었는가? 전혀 새로운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계속해서 필요한 기본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  
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도, 7차 회담 이후에도 부속합의서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만드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항이 벌어  
지면 새로운 사항에 대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고, 남북고위급회담 테두  
리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남북고위급회담대표로 했지 않느  
냐 이것입니다.

초기에는 바쁘겠지만 나중에도 계속 존속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7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측 해석과는 전  
혀 판이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언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되묻고 싶고, 또한 이것은 정치분과

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 북측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계속 존속하며,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존속하며, 공동위원회는 실천기구로서 존속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병존한다, 이거지요. 고위급회담도 존속하고 분과위원회도 존속하고 공동위원회도 존속하는데, 그 책임과 기능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 남측의 유권적인 해석입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측이 생각하는 입장과 서로 다르다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 같은 것을, 총리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부터 달라지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과위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7차 고위급회담이 성립되면, 개최가 되며는 그때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서로 나올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위원회를 4개로 하는 문제와 2개로 하는 문제, 4개와 2개로 최초 입장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귀측의 얘기는 많으면 번잡하고 복잡하다, 오히려 효율적이 못할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셈인지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갖

고 있습니다. 4개 정도는 돼야 덜 복잡하고 덜 번잡하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행·통신에 대한 것은 통행·통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마주 앉는 것이 좋고, 또 경제는 경제, 비경제는 비경제, 사회문화는 사회문화 이렇게 마주 앉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인도문제는 인도문제로 마주 앉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통행·통신부문을 경제에다가 통합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통행·통신에서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간에 아까 항구를 남포와 인천하고 연결하자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철도를 어디와 어디 사이 연결한다, 도로를 어디와 어디 사이 연결한다, 항공을 어디와 어디 사이 연결한다 할 때 그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끝나는 일인가? 앞으로 경의선만 연결하겠습니까? 경원선도 연결해야 될 것이고, 일차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부터 먼저 하지만, 시간이 더 가면 앞으로도 계속 할 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전문일꾼들로 하여금 협의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측의 입장을 가지고 가서 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귀측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또 더 빨리 이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귀측이 기초발언문에서 핵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족자주적 입장과 관련해서 얘기한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귀측의 연형묵 총리가 우리측 정원식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도 오후에 제가 봤습시다마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남쪽에 있는 동포들 전부가, 대단히 이 문제가 중요하고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측은 의심을 빨리 떨쳐 버리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남북간에 화해협력시대가 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우리 언론기관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강력히 내걸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내용들이 신문에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핵문제와 관련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유보하겠다, 또 남북분과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유보한다든가, 뭐 이런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귀측이 국민대 국민들의 소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그리고 정부당국자가 말한 것과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주의하지 않은 결과, 마치 우리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당국도 국민의 소리에 유념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게 되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한, 무슨 뭐 유보한다 어쩌다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유보하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빨리 좋은 진척이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질 것입니다.

제가 핵문제에 대한 남북접촉의 대표로 일곱번이나 나와서 귀측의 대표와 쪽 논의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문제를 자꾸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조연설에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귀측만이 이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민족자주적 입장과 관련해서, 우리측이 마치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 구속돼서 행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담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주적 입장, 당사자해결의 원칙을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까운 우방들이 있고 해서, 우리 우방과 국제사회에서, 또 여러 나라들과 국제적인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눈치, 누구의 구속을 받고, 이런 말은 회담장에서는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보나 관보인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에서 귀측 주민을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회담상대방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정제하는 입장이 못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볍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귀측에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더 토론할 것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김정우) : 제가 좀 이야기 합시다.

우선 핵문제에 대해서 이제 임동원선생은, 우리 정부로서는 뭐, 유보하겠다, 또 뭐 합의서 이행을 안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도 책임적인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3일 귀측 최고당국자가 텔레비전을 통한 특별회견에서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합의서를 실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서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이야기했는가? 그렇게 되면 최고당국자가 말한 것이 정부를 대표 안하는가? 그럼 그쪽 최고당국자가 정부를 대표않는 개인입니까?

다음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2월 25일 힐튼호텔 5도민교례회 초청간담회에서 핵문제와 리산가족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경제교류·협력문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다음, 1차 정치분과회의, 2차 군사분과회의에서 귀측 기초발언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까? 핵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합의서 이행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준다, 원만한 분위기하에 합의가 되기 힘들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도 북남회담에 나와서 말해, 자기 국민들 앞에 텔레비전 앞에 나아가서도 말해, 무슨 5도민교례회 초청간담회라는 것을 놓고도 말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갑수 차관도 역시 핵사찰문제와 연계해

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하도 귀측에서 자기 주장이 옳지 않다 하니까, 아마 3차 회담에서부터는 우리가 정치군사회담에서 제기한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여서 오늘은 아마 말씀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리 동지가 귀측 총리에게 편지를 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임동원) : 그건 내가 얘기하죠.

북(김정우) : 가만 내가 채 말씀을 못드렸는데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남(임동원) : 핵문제입니까?

북(김정우) : 그 다음에 누구의 눈치를 본다, 안본다, 자주성이 있다 하는데, 물론 자주성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또 자주성의 견지에서 하자고 합의서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쪽에서는 당사자원칙에서 합의서를 했다, 자주성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천행동에서는 그렇게 옮기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내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동원 위원장이 나하고 판문점에 나올 때 기차간에서 나보고 물어봤죠? 김종휘 대표와 그 다음에 임동원 대표와 이동복 대표가 참가한데서... 대우그룹과 협조하던 것은 합의서와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겠는가? 한갑수 차관도 물어봤고, 그래서 내가 명백히 말했습니다. 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시작한 대사이기 때문에 합의서와 별도로 그냥해야 된다...

그런데 임동원 차관이 통일원 차관으로 앉아서, 실제 지금 대우그룹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내용들이 2월달에 실무대표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여보냅니까? 결국은 뭐 핵사찰문제와 관련해서 유보하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진전과 고려해서 하겠다, 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귀측에서 보여주지 않았는가?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에 하던 것도 합의서 채택된 다음에 더 가속화하고 더 많이 해야겠는데, 오히려 중단시키면서, 실지 행동으로 넘어가면서도 우린 그렇게 안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가끔 회담때마다, 언론매체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우리말을 믿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 그쪽의 KBS나 그 다음에 다른 방송이나 텔레비전도 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겠지. 귀측에서 기자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 하게 된다면, 오늘 임동원 선생이 한 말을,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남측기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계속 기자들이 거짓말만 하는가? 우리는 남쪽 언론매체들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왜?

기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여론의 대변자 아닙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조금 가미한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최고당국자나 총리가 하는 말까지 가미해서 말하겠는가? 5도민교례회 그럼 안했는가? 힐튼호텔에서, 2월 25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좀 신중히 들어야겠습니다.

남(임동원) :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하지요.

대통령께서 텔레비전화견에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들었지만, 핵사찰이 실시 안된다면 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는가 우려된다는, 우려의 뜻의 표시였어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정부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식입장입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어떤 모임에서 역시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게 안돼 가지고는... 하는 우려를 표명한 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그걸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측 수석대표가 기초연설문에서도 핵 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려!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매체의 것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매체는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조언을 해주고, 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주고, 때로는 압력도 넣고... 이것이 자유민주사회의 언론의 본래사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서 얘기한 것을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민주사회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언론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정부의 입장과도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서로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우리도 그쪽 현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나도 귀족의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이 왜 그런 식으로만 보도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된 것이 최근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노동당 당보고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관지니까, 하나는 당보고 하나는 관보라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아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건 그것과 달라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핵 문제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압력, 이렇게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하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고 오늘 논쟁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이 정도 해듭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룰 것은...

북(김정우) : 가만, 내가 다른 문제 말 못했지요.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 임선생 모든 것은 명백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또 내가 실례를 드니까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 대우문제를 중지시킨게 사실이라고, 핵사찰 문제와 관계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실천

적으로 증명되는데, 뭐 우려한다고 했건 유보한다고 했건, 좌우간 하던 것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고, 정 그렇게 자기 국무총리가 말한 것도 시간이 바빠서 통일원차관이 똑똑히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서 들려주지요. 그것 한번 읽어보오, 동무.

남(임동원) : 오늘 그 문제 논의하러 왔어요?

북(김정우) : 아니 난 그쪽에서 똑똑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임동원) : 상대방의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할 겁니까?

북(김정우) : 아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니까, 명백히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손종철) : 1992년 2월 26일 라디오...

남(임동원) : 그것은 귀측에서 만든 것일 것이고 나중에 우리측 것을 정확히, 내가 정확히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귀측선전매체에 쓰이는 것이지, 이런 문제에 왜 그렇게 나와요?

북(김정우) : 귀측의 방송 자료인데...

남(임동원) : 아니 그것은 그만 하세요. 왜 본질적인 문제를 하지 않고, 회의를 좀 전향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르기 시작합니까?

북(김정우) : 아니 다른 문제가 아니지요. 선생이 우리 총리 편지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남(임동원) : 그쪽이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북(김정우) : 아..., 내가 우리 편지가 아니고 제기한 것은 없죠.

남(임동원) : 아니죠.

북(김정우) : 내 기본 발언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남(임동원) : 우리 최고당국자가 유보했다 하는 얘기를 인용했기 때문에  
귀측의 총리도 그런 편지를 어제 보내왔지만, 하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북(김정우) : 아니 사실이야 말했으니까, 말한대로 들어야지...

남(임동원) : 언제 그런 말을 했나 말이요?

남(송영대) : 위원장님, 그쪽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북(김정우) : 가만, 그쪽에서 위원장에 그 의견을 다 승인받아야지만 말하  
게 됩니다. 그냥 말해선 안돼요.

남(송영대) : 저쪽에서 선생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북(김정우) : 아니 이 동무는 내 승인 받지, 그쪽 승인 안받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자기위  
원장 승인받아 말하시오. 회의 도덕과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남(임동원) : 난 동의 안합니다. 동의 안하는데... 아, 그런데 여기 뭐하러  
나왔는가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본질적 논의를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정치가지고 논의하자는 겁니까, 군사가지고  
논의하자는 겁니까? 그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북(김정우) : 협력·교류에 그쪽 당국자들이 실제로 유보를 한다, 보류를  
한다는 말 인정합니까?

남(임동원) : 누가 그걸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북(김정우) :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보시라구요.

남(임동원) :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원본을 갖다 들려줄게



요, 원한다면 다음 회의에서...

북(김정우) : 그쪽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 거라도 들어보라고요. 우리 원본이 있으니까...

남(임동원) : 그쪽건 들어야 소용없어요. 그건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 우리가 우리 원고를 가지고, 말한 사람의 원고를 가지고 애길해야 합니다.

북(김정우) : 아니 그쪽에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자료라도 우선 봐야지, 본 다음에 견해를 말씀하라는 말입니다.

남(임동원) : 정확한 원고를 가지고 얘기를 듣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북(김정우) : 아니 임선생님, 처음 만나 회담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왜 자꾸 말을 돌리오? 이제 처음에 그러지 않았오? 임선생이 나보구, 우리 정부는 언제나 협력·교류나 합의서 리행을 보류한 적 없다, 그런말 한 적 없다. 그래 내가 실례를 드니까 그것은 고려하겠다고 그랬다. 아... 고려하겠다고 했다면 그럼 최고당국자가 고려하겠다고 그랬던가, 그 다음에 아니... 총리가 안하겠다고 했다던가, 여기 명백히 자료가 있는데, 그쪽 자료가 없다면 우리 자료를 봐야죠.

남(임동원) : 내 얘기 들어요, 그러면. 문제를 확실히 해요. 아까 그쪽에서 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공언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보하겠다고 공언했다,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유보하겠다... 누가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한 적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북(김정우) : 유보하겠다는, 실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히 해둡니다.

남(임동원) : 분명히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드린 것은, 남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한다 하는 것과 유보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어  
요.

북(김정우) : 그러면 이미 하던 협조대상도 중단시킨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 그건 왜 중단시켰어요?

남(임동원) :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토의합시다.

북(김정우) : 앞으로 구체적이 뭐요? 실지 임 위원장이 말하는 것하고 현실이 다르지 않소?

남(임동원) : 그건 기본적인 문제부터 토의해 들어가면서 토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오늘 회담을 잘 진행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북(김정우) : 아래 사람한테 곤란하다면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1992년 2월 26일 라디오 한국 방송자료, 라디오 한국입니다.

남(임동원) : 라디오 한국 있어요?

남(신현웅) :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이면 몰라도 라디오 한국은 없습니다.

남(임동원) : 그것보세요. 처음부터 틀린거라 이거예요. 예... 라디오 한국이라는 라디오는 없습니다.(웃음)

북(김정우) : 라디오 서울이든 라디오 한국이든, 좌우간 거기의 라디오 방송이겠지...

남(임동원) : 처음부터 그렇게 출처가 틀린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북(김정우) : 출처가 틀리는지 내용을 들어보시오. 정원식이...

남(임동원) : 내 듣지를 않겠어요.

북(김정우) : 핵 문제와 이산가족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원식은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있는 이북 5도민교례회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핵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했다.

자, 이렇게 돼도 현실이 아닙니까? 난 그래도 좋아요. 그쪽에서 임선생이 우리 최고당국자가 말 안했다, 우리 총리가 말했다 하면 자 그것을 믿는다 치자, 그러면 실지 합의서 채택 전부터 하던 것까지 중단시킨 것은 현실이 아닌가? 그러면 실천이 증명해 주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남(임동원) : 자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토의 합시다.

북(김정우) : 그러면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합시다. 그쪽에서 나중에 토의하자니깐 잘 검토해 봅시다.

그 다음에... 대우 문제를... 이제 즉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괄실천문제... 했는데, 이를 명백히 하십시오. 우리 6차 고위급회담 때 우리 연행목총리가 기초 발언에서 발언을 했고, 아까 임선생도 말하다시피 「일괄합의, 동시실천」 원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필요한 것은 건당 토론해서 실천해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괄합의, 일괄실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협력분과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괄합의, 동시실천」을 안하겠다고 전면 거부하면서 만약에

하나하나 해 가지고서 실천해 나가자, 이렇게 되면 기본합의서 리행에 모순이 됩니다.

왜 모순이 되는가? 이제 임선생이 말씀하신거 보니까 공동위원회는 7차 회담때 발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면 또 다음번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속합의서는 발족시킬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는데, 엄연하게 이 문건을 검토해 보게 되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2조 2항에는 “해당부문의 준수와 리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에 들어가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남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2항과 3항에는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를, 다 합의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귀측에서처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만 이번에 하고, 7차 회담까지 하고, 부속합의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공동위원회를 하나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4개씩이나 나오자는데, 그러면 다른 공동위원회는 일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아까 부속합의서가 되어야 공동위원회가 자기 일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아마 인정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를 나오자면 순리대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공동위원회가 자기 일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나는 어떤 의견인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한달 반밖에 안남았다. 그러니까 7차 고위급회담 때까지 부속합의서도 만들고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만들어 빨리 발효시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쪽엔 자꾸 뭐 잘 산다는 건지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지만,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대결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외세에 의존 안한다면... 실지로 안하면 좋습니다. 안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모든 정세를 분석해 놓고 보면 기본합의서 리행을 자꾸 질질 시간끌지 않느냐, 그 끄는 방도로 부속합의서 한두개 가지고 전반 기본합의서 리행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 에...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부속합의서는 하나로 해야 됩니다. 하나로 하고 공동위원회가 나오면 그 즉시 일에 들어가게끔 하자.

그쪽에서 제기한 이산가족 문제도 빨리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경제협력교류도 해야죠, 그다음 해로도 열어야죠, 체신도 해야죠, 우편도 교환해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무엇 때문에, 2월 19일날 우리가 효력을 발생해 놓고...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보십시오. 3개월 내에, 3장 22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3장 22조에는 이 합의서가 발효 3개월 내에 북남협력, 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들을 내와서 구성·운영한다, 구성한다가 아니라 구성·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운영한다 하게 되면 2월 19일부터 석달이면, 5월 19일입니다. 공동위원회 문건은 누가 수표하게 되어 있는가? 총리들이 수표하게 돼 있거든요. 총리들이 수표하는 날짜는 우선 5월 5일부터 8일까지 7

차밖에 없습니다. 그후에 뭐 10일새에 또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면 무조건 공동위원회 문건에 수표하고 운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철저히 부속합의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 「일괄합의, 일괄실천」을 우리가 덮어놓고 100% 하자는 것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발언에도 다 여유를 두었거든요. 「일괄합의, 일괄실천」 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철도·도로, 이것은 군사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문제와 결부됩니다.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연결하는데 비무장지대에다 술한 무기 갖다 놓고서, 자기 무기뿐 아니라 미국사람들 무기, 미국사람들까지 끌어다 놓고서, 어떻게 거기다 도로를 연결하고 철도를 연결하고 운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거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하게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원칙이 서야 되는가? 기본합의서에 준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준해서, 빨리 공동위원회가 일할 수 있게끔 원칙들을 물러서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자기 일을 하게 하자, 이게 첫째 우리 의견이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많이 내올 필요성 없이 두개로 하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조 6항을 보십시오. 1조 6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부문별협의회들을, 실무협의회들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이요, 체신이요 다 어디다 두면 되는가? 경제공동위원회 실무협의회에 두면 간단해 집니다.

또 그쪽에서 말하는 인도적인 문제, 그것은 적십자 단체간에 하자는  
말입니다. 아, 임선생도 잘 아시고 여기 저 송영대 선생 특히 잘 아시겠  
는데, 우리는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고향방문단, 1차 고향방문단도 교환  
했고, 또 10차 회담까지 하면서 많은 원칙적인 문제를 토론해서 거의 의  
견을 좁혔고, 1989년 12월달에는 내가 알건데는 제2차 예술단 및 고향  
방문단 351명 합의해 놓고 합의서까지 만들어 냈다가 결국은 리행 못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이것 제출한 것  
보니까 뭐 구체적인 것 다 썼는데, 주소성명은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뭐 다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실지로 실천할 의도가 있으  
면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됩니다. 가장 빠른 길<sup>이</sup> 무엇인가? 이것은 적십  
자회담 빨리 재개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속합의서 4조 1항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적  
십자단체들이 원칙적으로 이것 빨리 해결한다... 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다 공동위원회, 민간이 할 것, 적십자단체 할 것, 체육회 할 것, 다  
담아가지고 공동위원회 한 여나쁜개 열어놓고 복잡시리 계속 감론을박  
말만 하겠는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남(임동원) :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적십자회담대표로 있  
던 송영대 대표, 아니 위원한테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남(송영대) : 귀측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를 발  
효를 시키고, 화해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화해협력시대에 맞게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귀측에서 보인 태도를 보니까, 좀 과거의 구태의연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귀측에서 우리측의 회담자세 등등해서 자꾸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귀측의 회담자세와 관련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부여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는 서로 서로 살려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김정우) : 좋습니다.

남(송영대) :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북(김정우) : 임선생...

남(송영대) : 말씀드립니다.

북(김정우) : 아니 하나 말씀 좀,

남(임동원) : 얘기 끝내고...

북(김정우) : 아까 끝나고 우리 위원한테 권한 줬을 때 임선생이 동의 안 해서 말을 못했는데, 난 저쯤까지 들으면 의정 다 알겠습니다. 중지하십시오. 아까 임선생이 말했죠? 나보고 내가 동의 안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나는 존중해 줬단 말입니다. 의정 중지하십시오.

남(임동원) : 아까 그거 적절치 않은 거 읽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북(김정우) : 적절치 않다니? 그리고 이렇게 위원들이 이려고 저려고 말



하기 시작하면 회담이 안됩니다. 그리고 임선생하고 나하고는 처음 마주 앉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아는 처지 아닙니까?

남(임동원) : 그렇지요.

북(김정우) : 그러니까 복잡하게 회담 운영하지 말고... 난 왜 아까 임선생을 존중했는가? 우리 위원이 말할 논거는 명백합니다. 논거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담을 제대로 운영하자, 위원장들이 운영하자, 그래서 내 존중해 줬는데, 자기 위원한테 운영권을 주고 내 동의를 안받고 하면 실례죠. 그래서 동의를 안했으니까...

남(임동원) : 내가 그래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송영대) : 제가 그걸 받았고, 제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북(김정우) : 내가 동의를 안했단 말이오.

남(송영대) : 제 말씀 들으십시오.

남(임동원) : 맞아요. 인도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북(김정우) : 이산가족 문제 다 연구를 해 보시라요.

남(임동원) : 잠깐 들으세요.

북(김정우) : 우리 위원이 먼저 말하겠다는데 거기서 동의를 안줘서 안했으니까 그쪽에서 중지하는게 옳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남(임동원) : 앞으로는 있지도 않은 라디오 한국같은 이야기 가지고 나오지는 마세요. 라디오 평양이든지, 그런 것은 발언권 안 줍니다.

북(김정우) : 자, 우리 동무들이, 수원이 이렇게 써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라디오를 틀어 보십시오. 정확히 라디오 한국이란 방송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이 아니라 라디오 한국... 그쪽에서 아마 자기 방송 어떻게 하는지 제목도 모르고 듣는 것 같은데...

남(신현웅) : 우리나라엔 방송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북(김정우) : 수십개 다 알아야지...

남(신현웅) : 라디오 서울이, 라디오 서울까지는 나갔는데, 라디오 한국은 만일이라도 최근에 민방이 SBS가 생겨가지고요, 그 방송이 이름했는지 몰라도, 라디오 한국은 처음 들어요.

북(김정우) : 우리보다 자기 실정을 잘 모르시는구만...

남(임동원) :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회의는 그래도 몇가지 문제는 의견조정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전제는 서로 첫회의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입장을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돌아가서 연구를 해서 2차회의 때 보다 합치될 수 있는 안으로 발전시켜 나오자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죠.

그런데, 부속합의서를 몇개로 하느냐 하는 숫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냐 네개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귀측의 입장은 부속합의서를 꼭 하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지금 정치·군사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유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줘

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 그러나 우리측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부속 합의서가 복수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 또한 그렇다고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 들어갈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우리측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도 두개나 네개나로 지금 서로 최초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다행한 것은 귀측에서 공동위원회를 하나가 아니고 두개로 냈다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로 봅니다. 부속합의서 하나 갖고 나오면서 공동위원회 또 하나 갖고 나오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그래도 경제분야, 비경제분야로 나눈 것만 해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 두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세개면 어떻고, 네개면 어떻느냐? 이런 것도 서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를 진행시키는데 무슨 장애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될 것이다.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서로 내용을 연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제가 제의한 고령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이번 단오절을 계기로 해서 좀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귀측이 부속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얘기다 라고 주장할 것은 예견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1970년대부터 많이 논의를 해왔지마는, 1985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그후에는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후에도 적십자사간에 합의서까지 만들어 냈는데도 ... 1990년인가요? 제2차 고향방문단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십자간이 아니라 당국간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기본합의서 18조에 올려놓은 이상, 당국이 해결할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적십자사에 또 맡기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귀측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시간이 걸릴테니, 나이많은 노인네들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소원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다만 얼마 안되는 숫자지만은 한번 실현하면 어때요?

오늘 김위원장이 여기서 전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결정할 입장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제의했으니까 가지고 돌아가서 다음 회의에 좀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왔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바로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테고 우리가 갑자기 제의한 거니까... . 다음번에 긍정적인 회답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남북 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모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제기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 은겨레의 기대와 성원 속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탁구와 축구종목 세계선수권대회에 하나의 팀으로 참가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때 그 역량이 얼마나 크게 발휘될 수 있는가를 온세계에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구와 탁구의 단일팀에서 얻은 이 소중한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지난 1963년부터 즐기차게 추진되어온 올림픽 단일팀 참가라는 숙원을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은 '90년 10월 통일축구 교환경기중에 양측의 체육장관이 만나서

금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남북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마당에, 이미 합의한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단일팀 참가 문제 논의를 시간적으로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귀측의 확고한 입장을 좀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3월 25일, 앞으로 며칠 안남았지만, 3월 25일이 예비 엔트리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귀측에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질 않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북(김정우) : 예, 그래서, 임선생 이렇게 합시다. 좌우간 귀측에서 정치분과 위원회나 군사분과위원회보다 전진적 자세로 부속합의서를 4개라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

남(임동원) : 더 가지고 나오기를 희망했어요? 4개라도 그러게?

북(김정우) : 협력·교류분과위원회는 많은 전진적 자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

남(임동원) : 모범적이지요, 이번에는 ...

북(김정우) :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준 그러한 충고를 많이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를 하나로 하는가, 4개로 하는가? 하는 문젠데, 우리가 여기서는 양보를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합의서 내용을 어느 만큼 구체화하는가에 대해서는 토론하되, 4개로 하든가 하는 그런 것은 허용 안하겠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 2항에는 명백히 단수로 되어 있고,

또 이게 뭐, 우리나라가 1444년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서 550년이 지났는데, 문법이 아직 완성 안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언어처럼 다양하고, 정교하고, 문법이 구체화된 나라가 없어요. 이게 또 무슨 저 상회사의 계약문건도 아니고, 46년만에 쌍방 당국을 대표해서 총리들이 수표한 문건인데, “각각 부속합의서를” 했으면, 이걸 단수입니다.

우리 이 문건을 만들 때부터 하나로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왜? 문건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것은 리행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하다 말고, 이럴까 봐 아예 하나로 해서 원칙을 딱 눌러서, 공동위원회에 가서는, 공동위원회가 그 다음에 빠른 것은 빠르게 실천하고 늦은 것은 늦게 공동위원회에서 하자.

이제 이 분과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또 몇 개씩 나오고 부속합의서를 계속하게 되면, 그저 계속 회의만 하고 앉아서 번거로운 문건은 많은데, 실천에 옮겨질게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젠 쌍방이 수표했고 총리들이 수표했으니까 하나로 하자. 외래어도 보십시오. 그게 “합의서” 하게 되면,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들 영어도 잘 아실건데, “Agreement”, “합의서들” 하게 되면, 아 “Agreements”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거 그게 어떡해서 “를” 했는데 “들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 Protocol, Protocol ..., 다 단수, 아 그런데 민족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들이 문구 하나를 놓고 이걸 “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로 하자. 하나로 하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4가지 합

의서를 제기했는데, 내안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자는 방문 동안에 필요한 물품과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 및 현금을 휴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물품과 선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다 공동위원회에다 넘겨서 빨리 공동위원회가 일하게 해야 됩니다.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해야지, 거저 갑론을박 말만 해가지고는 이게 성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5일에 열리는 7차 고위급회담에서 북남 사이의 부속합의서를 꼭 수표하고, 꼭 공동위원회를 무조건 발족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위원접촉을 우리가 합시다.

남(임동원) : 좋습니다.

북(김정우) : 군사하고 정치분과는 시작 못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협력·교류가 이게 통일의 기반을 기초해 나가는 분과인데, 우리가 좀 먼저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접촉을 해가지고, 이 위원접촉에서 그쪽에서 지금 합의서 4개,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4개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이 4개와 우리는 부속합의서 하나, 공동위원회를 2개를 하자는 것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2개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를 하나로 하는 안, 그쪽에서는 4개로 하는 안, 이걸 놓고 우리가 의견을 좁혀봅시다.

그렇게하고 공동위원회는 그쪽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게 되면, 공동위원회를 4개를 내오고 그안에 또 실무협의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 그렇게 하면 번잡해집니다. 그

령기 때문에 우리안대로 공동위원회를 2개로 하고 그안에서 실무협의해 보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서로 쌍방이 의견을 좁혀보도록 합시다.

남(임동원) : 제가 한두가지 우리 김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법문제를 얘기했는데, 단수냐 복수냐?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뿐만 아니라 기본합의서 모든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기안을 같이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까?

북(김정우) : 임선생 수고 많이 했지요.

남(임동원) : 제가 고위급회담 시작한 이후로 남북간에 접촉이 37번, 정치군사가 있으니까, 정치·군사 분과위원회 빼고 36번인데, 36번 다 참석해서 직접 문안을 작성하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남북간에 이 문제가 지고 많이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런 이론대로 단수 개념으로 쓰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해석은 또 달라요. 그런데 왜 달라져 버렸는지, 그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의논해야 될 문젠데, 여기 2조 2항이 단수이기 때문에 그건 단 하나다, 이걸 틀린 해석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논쟁 붙이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4개의 부속합의서와 4개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무슨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귀측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



다. 아마 귀측도 알겠지만은 지난 토요일에 핵문제 7차 대표접촉을 통해서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봤고, 내일 발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젠 한고비를 넘겼어요. 이런 모든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면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마음대로입니다만, 이런 것을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부속합의서와 하나의 부속합의서, 이걸 절대 하나라는 것을 양보 안한다 하는데, 협상 혼자서 하겠어요? 상대방이 있는데 ... 그것은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주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고위급회담의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도 서로 몇개 냈다가 서로 협의해서 몇개도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말고, 절대는 아니고, 단지 우리는 이렇게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뭐 4개하고 하나가 다른 숫자가 되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신축성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협상엔 상대방이 있지, 혼자서는 못한다는 사실 ...

그 다음에 오늘 저도 위원접촉을 제의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위원접촉을 하자는데는 아주 동감인데, 지금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보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4개의 부속합의서안을 갖고 나오고, 4개의 공동위원회 구성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4사람의 위원들이

각기 위원접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거기서는 물론 한 사람이 다하는 것이 ...

북(김정우) : 예, 아니 한팀 ...

남(임동원) : 예, 한팀, 한팀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오셨겠지요.

북(김정우) : 그것은 한팀으로 해야지 ...

남(임동원) : 예. 그쪽에서 당연히 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리라 보는데, 이걸 예를 든다면 경제문제에 대한 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앉아서 협의해야 되거든요. 사회문제는 사회문화 전문가들이 앉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사 이것을 하나로 한다, 두개로 한다, 세개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합의된다 하더라도, 부문이 이렇게 다르니까 논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를 모르는 사회문화분야 사람이 경제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예요. 그건 어떨까요?

북(김정우) : 그런데 임선생, 이제 거기서 한 것처럼 부속합의서를 세분화 해서 해놓게 되면 그런 논조가 서고, 우리는 리행기구인 공동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서 자기 일을 하게 하자니까, 원칙적인 문제들 이것만 방향으로 이 부속합의서에다 넣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한팀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토론해보자 그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임선생이 말 한 것처럼, 물론 회담은 쌍방이 하죠. 쌍방이 하는데, 무얼 명백히 해야 되는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표한 합의서에 준해서, 합의서 원칙을 위반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하는 원칙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

미 합의서에 단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로 하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것도 옳고, 다른 하나는 부속합의서를 여러개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보장 못합니다.

남(임동원) : 에, 그래서 ...

북(김정우) : 7차때 우리가 발효시키자 말입니다.

남(임동원) : 시간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귀측도 한 30개 조항 갖고 나왔고 우리도 한 80개 조항 갖고 나왔는데, 꼭 뭐 숫자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잘 또 협의해 보면, 누가 압니까? 다 합해서 한 60개 조항으로 합의가 될는지 ... 그건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알고보면 아 우리는 이것을 빠뜨렸군, 이걸 넣는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요. 어떤 것은 우리가 주장했다가 철회한 것을, 그쪽에선 안가지고 나왔던 것을 나중에 들고 나와 그걸 넣자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도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서로 토의해 가지고 발전이 되었으니까요. 변증법적 발전을 한거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귀측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한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좁혀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그 다음에 세부합의서, 뭐 세칙이라 그래도 좋고, 이름이야 무엇이든지간에 그렇게 3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합의서는 남북간의 기본법이요, 헌법과 같은 거고 ...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는 법률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세부합의서는 시행규칙과 같은 것들이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마다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그 부속합의서, 법률적 성격을 띤 것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적당히 다 포함되어야 하지, 그걸 다 세칙으로 넘기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합의서 제15조에 “물자교류를 실시한다” 하는 한마디가 딱 들어 있어요. 그렇죠? “물자교류 실시한다” 하는 것은 기본합의서에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속합의서안에는 물자교류를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류당사자, 품목과 수량의 합의, 가격결정방법, 관세, 수송방법 등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세부합의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볼게 무엇인가? 그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각 부분에 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결제방식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또 이를테면 기본합의서 제19조에 보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속합의서를 어떻게 내어 놓았느냐? 우선, 급한대로 판문점과 장단을 통과지점으로 하는 철도와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자. 그리고 경원선 같은 것은, 나중에 합의하여 또 하자는 것이지요. 이제 귀측에서도 좋은 안을 내놨는데, “항구는 우선 남포와 인천을 열자”, 그런 것은 부속합의서에 나오는 애긴데, 그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철도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항만의 출입과 관련된 복잡한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등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합의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부속합의

서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슬기롭게 의논해서 잘 정해야지요. 지금, 우리는, 기본합의서에서 이만한 수준의 것을 정했다면 부속합의서에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았고, 귀측의 부속합의서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부합의서가 얼마나 범위가 많고 복잡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제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초행길이니까, 서로 연구를 해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속하고 좋겠는가를 협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귀측의 안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구요. 그걸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 것인가는 나중에 위원접촉을 통해서, 이런 것은 넣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빼도 좋겠다, 이것은 세부세칙에 넘기자,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야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산가족문제를 보더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방문을 실시한다 하는 것이 기본합의서에 한마디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속합의서에서는 상봉과 방문하는 방법, 판문점면회소 설치운영, 월 1회 운영하자는 등 이런 중요한 것만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부합의서에서 구체적으로 1회에 200명 이내로 '하고, 한가족이 몇명 이내로 해야 하고, 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합의되어야죠. 그것 없이 어떻게 실시에 들어갑니까?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다룰 수 밖에 없을 겁니다마는 ... 좀 좀허봅시다.

북(김정우) : 그래서 임선생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부속합의서에서 어느

정도를 넣는가 하는 것에 견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좁히자  
말입니다. 좁히되, 부속합의서를 여러개로 만들지 말고 좁혀서 만든 것  
을 한단에 묶어 하나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번 7차 고위급회담  
에서 꼭 수표를 하자. 그래야 공동위원회가 발족해도 의의가 있다. 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그쪽에서 공동위원회는 7차회담에서 수표하고 부속  
합의서는 무슨, 8차 쯤에서 하고, 또 뭐한 것은 또 9차에서 ... 하지 말자  
말입니다.

남(임동원) :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북(김정우) : 되게끔 하는 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임동원) : 우리도 되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북(김정우) : 되는 방도는 부속합의서의 원칙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죠. 우리 봅시다. 논리적으로 봐서 분과위원회는 하나고 공동위원회는,  
그쪽에서 4개이나, 우리는 2개를 제의했던 말입니다. 이제 리행기구는  
몇개인지 토론해 보잔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2개 나왔다 하면, 분과위원회 하나 해주고 나서 거기서  
숫한 부속합의서를 세말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공동위원회 둘이 갈라 가  
지고 자기할 것 자기가 하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까? 아, 통일원 차관이  
암만 만능이라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 다 알 수 없듯이, 이  
런 협력·교류 모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같지요.

그러니까, 공동위원회에다 넘길 것은 빨리 넘기자. 그런 다음 우리 분  
과위원회에서는 꼭 할 것만, 원칙적인 것, 우리 경제분과위원회에 대한

것을 보십시오. 스위스프랑문제, 청산결제문제 들어갔지, 아주 명백히 집어넣었던 말입니다. 그런 것만 해서 빨리 공동위원회 열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물론 임선생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부속합의서를 자꾸 여러개 하자고 하고, 뜯어내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력·교류를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간다 이거죠.

남(임동원) : 자꾸 의심하지 마십시오.

북(김정우) : 좋습니다. 우리 의심 안하겠는데, 7차 때 수표하자, 오늘 나가고 약속합시다.

남(임동원) : 지금 우리가 합의를 못보는게 부속합의서를 몇개로 하느냐, 공동위원회를 몇개로 하느냐인데, 그것은 나중에 합의를 보되 어떻게 해서든지 7차 고위급회담때 부속합의서도 4개가 되어도 좋고, 1개 되어도 좋고, 합의되는 대로 통과시키고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것이예요. 그것은 확고합니다.

북(김정우) : 좋습니다. 합의되었습니다.

남(임동원) : 몇개로 하는가 하는 것은,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원칙을 서로 인정하자 이거예요.

북(김정우) : 그것을 위원접촉에서 절충해 보자 이겁니다.

남(임동원) : 위원접촉에서 내용을 다 검토시켜 보면, 2개보다 4개가 좋다, 아니 하나가 좋다 하는 어떤 판단기준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나올 겁니다. 또 합의서,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4개 절대 양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으로는 4개, 4

개가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최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귀측도 신축성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어도 하나 아니면 합의 못본다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북(김정우) : 임선생, 우리 오늘 하나 합의했다 이겁니다. 7차에서 우리 수표하게끔 쌍방이 노력한다, 합의합시다.

그럼 7차에서 수표하는데, 7차 전에 준비해야 하니까, 문건을 끝내는데, 문건은 몇개로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부속합의서 경우에는, 문제는 다 만든 다음 합치면 하나이고 떼면 둘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기본합의서에다가 하나로 각각 부속합의서를 내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2,3개 만들자 하지 말고, 내용은 조정하자. 조정해서 나중에 합의해 다 만들어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두개로 하겠다, 우리 하나로 하겠다는 논거야 명백하지요. “합의서를” 했으니 하나로 하자, 내용은 합의해서 붙이자, 3개든, 4개든 나중에 붙이면 하나되지요.

남(임동원) :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북(김정우) : 그것은 그렇게 합의하자. 그래서 두번째 합의할 것은 무엇인가. 기본합의서대로 부속합의서를 만들되 내용 조정해 보자. 그래서 나중에 합치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이제 4개, 2개가 나왔는데, 그 문제 쌍방 연구해 봅시다. 다음 위원접촉 날짜 정합시다.

언제 할거요?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임동원) : 우리도 위원접촉을 하자는 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으로서 단오절을 기해서 고령이산가족 고



향방문단을 교환하자 하는 것도 같이 위원접촉에서 논의합시다.

북(김정우) : 예, 그쪽에서 제기됐으니 토론합시다. 토론하는데 그 문제는 7차 회담에서 발효가 되면 적십자회담에서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임동원) : 아니, 원칙문제만 합의해 주면 그 다음에 적십자사들이 알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다, 안한다 하는 정치적 결단만 하면 ...

북(김정우) : 아까 여기서 합의하자는 것은 그것을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차례까지 적십자회담을 했고 11차, 12차 회담도 합의해 놓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국간 취급하지 말고 적십자에서하기로 하자 ...

남(임동원) : 아니, 시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위원들이 접촉해서 건의하게 하되,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북(김정우) : 적십자회담에 넘겨서 토론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합의합시다.

남(임동원) : 적십자사에 넘겨서 토의하자? 그것은 기본합의서 18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남과 북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기로 되어 있어요.

북(김정우) :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적십자사에 넘긴다는 말이에요.

남(임동원) : 합의를 봐서 시행 대책을 적십자에 넘길 수 있지. 그러나, 한다, 안한다는 기본방향, 정책결정은 당국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조에 귀측에서 끝내 반대하다가 동의해서 넣은 것이에요.

북(김정우) : 우리가 넘겨준 부속합의서 4조 1항 보시라구요. 거기에 명백히 써 있어요. 우리 당국자들이 할 의무가 써 있어요. 적십자에서 해결

하도록 한다고 써 줬으니까 ... 그리고 적십자가 해야 지난 기간에 하던 것을 빨리 결속하지, 이제 당국자 사이에 새로 토론 시작하면 오래걸립니다.

남(임동원) : 아니 오래걸릴 것 없어요. 그 시행세칙, 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적십자에 맡기되, 이것만 결정하자 이것입니다. 단오절에 대개 몇명 규모로 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적십자사에 맡겨서 하자. 이러면 되는게 아니에요?

북(김정우) : 그쪽에서 어떤 때에는 권위주의를 반대한다고 그러더니, 적십자사가 하는 임무를 왜 그렇게 또, 몇명을 단오절에 한다고까지 여기에서 ...

남(임동원) : 그건 그렇지 않죠. 남과 북이 합의한 18조에 토대를 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남북당국이 하게 되어 있어요.

북(김정우) : 아니, 이번에 14대 총선에 좀 표가 모자라는 모양이시구먼. 그쪽에서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임동원) : 왜 또 그렇게 ... 단오절에 하자는 거요. 단오절 ...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북(김정우) : 적십자회담에다 넘기자고요. 자꾸 그것 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본문제를 토론하지 않고 세말적인 것을 토론하면 안됩니다. 아, 단오절에 한다, 위원장 사이에 우리 둘이 앉아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 적십자 단체에서 토론해야지.

여기 뭐, 그외에도 할 일이 가득한데 하필 18조만 가지고 토의할 것있어?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까지 7개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우리는 다른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선전적으로 몰리지 않느냐?

남(임동원) : 우리가 적십자사에 맡겨가지고 세부적인 시행문제를 논의케 하자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의가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몇십년 동안 적십자사에서 이 문제를 맡아 왔는가 말이요.

내가 제의하는 것은 단오절을 계기로 해서 고령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실시한다 하는 것은 당국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에 대해서는 적십자가 맡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단오절이다 아니다, 귀측에서 시급한 과제라면 4월에 당겨하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정부당국에서 결정해 주고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문제, 누가 맡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적십자에 맡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기본문제가 합의되지 않는한, 과거에 적십자회담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1971년 이래 ...

북(김정우) : 여러차례 했죠. 10차까지 ...

남(임동원) : 10차뿐입니까? 예비회담, 무슨 접촉 하면 수십번인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김정우 위원장께서 고위 최고당국자에게 건의드려 가지고 길을 트기 위해서 한번 실시하자구요. 그리고 그것만 결정해 주면 적십자에 맡기자, 이거예요.

북(김정우) : 임선생, 내가 물어보면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 협력·교류분야에서 취급할 실천조항이 9개중에 7개 조항인데, 그 중에서 제18조를 무슨 시범사업 때뚜름하게 지금 빨리하자고 하는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합의할 때 어느 조항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합의할게 없어요. 우리는 다 빨리 리행하게끔 대책을 취하자는 것인데, 왜 고령자 방문문제만 여기서 날짜를 정하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여기에서 날짜를 정할게 한두가지입니까? 그것은 응당 우리가 소관할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위원회에서 소관할 문제란 말입니다, 공동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위원 접촉날짜를 정하고 회담을 끝냅시다.

남(임동원) :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북(김정우) : 시범사업이라는게 어떤 때 필요하냐면, 안해봤을 때 시범이 필요한 것이지, 적십자 단체에서 토론해 가지고 1차 고향방문단 다 해봤는데 무슨 시범이 거기 필요있어요?

시범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시범, 시범하지 말고 ...

남(임동원) :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귀측에서는 오랜 십수년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말로만 했지, 실천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또 똑같은 입장이라고밖에 우리가 귀측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이 인도주의 문제의 시급성, 이것을 내가 아까 누누히 설명했잖아요? 여러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 이거예요. 남북화해시대를 여는 기념으로 말이야.

북(김정우) : 우리도 하자는 건데, 임선생. 하자는 건데 ...

남(임동원) : 하자는 건 십수년부터 하자고 그랬지. 실천이 안되니까 문제지 ...

북(김정우) : 그 쪽에서 기본합의서 토의할 때 당시와 지금까지 모든 분위기를 고려해서 요것을 하는 조건에서 요것을 한다 이렇게 전제조건 내놓은 것은 없는데, 이걸 딱 꼬집어서 전제조건으로 내놓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쪽에서 어떤 사람은 적십자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협력·교류가 없다 뭐 이런식으로 들고 나오다가, 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이해된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설명은 안하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합의할 것은 적십자 단체들이 회담을 빨리 재개해서 적십자 단체들이 결정한다. 적십자 단체들이 할 사업을 여기에서 우리가 소관해 가지고 결정하지 말자.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세말적인 것까지 날짜 정하고 인원수 정할 것은 가득하죠. 왜 그쪽에서 말하는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바쁜 문제도 많은데 ...

남(임동원) : 그러면 지금 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령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십자 단체간에 회담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제18조에 나와 있는 기본합의서의 이산가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것입니까?

북(김정우) : 전반, 전반문제를 협의하다가 그중에서 그쪽에서 고령문제가 바쁘다면 그때 적십자 문제를 토론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가 적십자에서 할 내용중에서 또 세말적인 것 뜯어가지고 당국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안됩니다. .

남(임동원) :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하여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본합의서 18조는 적십자회담에서 20년 동안 해가지고 되지 않은 문제를 남북당국이 나서서 해결한다 하는 정신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조에 “남과 북은”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북(김정우) : ... 대책을 강구한다.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남과 북은” 했으니까 북과 남이 대책을 강구한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가? 적십자에서 이걸 해결하라 ...

남(임동원) :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본합의서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실현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걸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산가족 문제는 “실시하고” 또 “실현하며”, 단정적으로 박았어요. 이것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선생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먼.

북(김정우) : 아니, 임선생. 그런데 그, 기본합의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요. 실현하며, 재결합을 실현하며, 자유래왕을 실현하며, 그런데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뭘 토론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과위원회에  
서는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남(임동원) :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실천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북(김정우) : 그 실천적 대책의 원칙을 토론하는데, 우리가 적십자 회담에  
다가 ...

남(임동원) : 원칙은 또 뭐야? 대책이지 ...

북(김정우) : 적십자회담에다가 위임하면 적십자회담에서 그걸 토론하면  
되는데, 여기서 날짜를 짚자고 하자는데, 그거야 남이 할 일까지 우리가  
다 하자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안하자는데 아니라 하는데, 말하자면 각기 자기 직능대로 이미  
하던 걸 그냥 하자는 겁니다. 그래 날짜를, 위원접촉 날짜를 정하고, 다  
음번 회담들에서 오늘 토론할 문제를 토론하자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자꾸 ...

남(임동원) : 그런데,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팀으로 접  
촉을 시키자는 이야기에요?

북(김정우) : 예. 한팀으로...

남(임동원) : 그쪽의 생각은 몇명의 위원을 접촉시키자는 겁니까?

북(김정우) : 3명, 위원 3명. 그 다음에 실무수행원도 3명, 6명으로 합시다.

남(임동원) : 3명, 3명... 그 문제는 우리가 사실 각각 분야별로 위원접촉을  
하자고 하는 견해를 갖고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용의가 있  
어요. 양보하는데, 그 대신에 4명, 4명으로 접촉합시다.

북(김정우) : 많지 않습니까?

남(임동원) : 뭐 하나 가지고 그래요? 날짜 정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4개 분야를 내놓았는데, 나중에 그게 몇개 분야가 되든간에 우리는 분야 별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4명, 4명 만나가지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북(김정우) : 우리는 3명이면 되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4명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죠. 우리는 3명 나오려는데. 그건 다 제각기 나와야 됩니까?

남(임동원) : 아니, 숫자가 같이 나오는게 좋지 않아요?

북(김정우) : (웃음) 아니, 그러면 3명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요.

남(임동원) : 사정이 있어요?

북(김정우) : 예, 3명, 3명 합시다.

남(임동원) : 3명, 3명...

북(김정우) : 또, 사람 많으면, 이제 위원장끼리 앉았을 때는 위원장이 있으니까 좀 간단한데, 사람 많아지면 뭐 더 복잡하죠.

남(임동원) : 그런데, 3명, 3명은 조금 보류해 두고, 여기서 협의할 의제가 무엇이라고 그쪽에서는 생각하십니까?

북(김정우) : 부속합의서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 2개를 문안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남(임동원) : 우선 말이죠.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는 내가 지금 쓰윅 볼 때 대단히 합의가 용의하게 되어 있어요.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도, 과거의 예로 봐도 그건 간단해요. 똑 같지



않아요? 구성, 운영, 기능, 발효절차, 다 같아요. 단지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기능이 어떠한가가 약간 다르다뿐이니까, 공동위원회는 그 나중 단계, 2차 회담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부속 합의서는 귀측이 내는 단일 포괄적인 합의서하고 우리측이 내는 4개의 합의서를 다 같이 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북(김정우) : 물론 예...

남(임동원) : 물론이죠. 그래서 내용을 위주로 우선 검토합시다. 4개, 하나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북(김정우) : 그렇게 합시다.

남(임동원) :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분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검토한다 이거죠, 예.

북(김정우) :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서 놓으면 되니까...

남(임동원) :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들이 위원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합시다. 그건 나중에 결정하면 되니까요.

북(김정우) : 예. 그렇게 합시다.

남(임동원) : 내용을 검토한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의제는 쌍방이 제시한 부속합의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되 그 형식, 숫자, 몇건으로 하는가 이런게 아니라 내용을 서로 토의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내놓았는가, 또 귀측이 왜 그런 조항을 내놓았는가? 하는 걸 서로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북(김정우) : 그렇게 합시다.

남(임동원) : 그렇게 하죠.

북(김정우) : 그 다음에 거기하고 나하고 앉아서 합쳐놓으면 하나 되는 거고. 갈라놓으면 둘이 되는 거니까.

남(임동원) :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의했던 이산가족문제, 고향방문단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돌아가서 상부에 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합시다. 이걸로 여기서 배제하지를 말고, 일단 상대방이 제기한 거니까...

북(김정우) :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바쁜 것은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속합의서가 되고 공동위원회 되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무슨 고령자 문제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말고, 이제 위원들한테다가 또 이것도 토론하고 저것도 토론하도록 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한게 무엇인가? 7차 고위급회담에서 무조건 부속합의서를 내놓아야 한다.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는 적십자회담에 가고 하나는 올림픽가고 체육회담이고 뭐고 다 병진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면적인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임선생처럼 자꾸 세말적인 것 하나씩 떼어주고 나가게 되면 과연 진짜 기본합의서를 운영하려는가, 이행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된다고요.

남(임동원) : 가만 있어요. 상대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먼저 그것을 한다 안한다 하는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깊이 토론을 안해

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합의되고 나면 시행과 관련된 문제는 적십자사로 하여금 하게 하자, 하는데 의의가 없어요.

이제 그 문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기본 원칙이 뭐 하는 것은요, 상부에 각각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상부의 견해를 들어서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북(김정우) : 상부의 견해 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명백한데... 우리 입장이 무엇인가? 7차 고위급회담 때까지 부속합의서를 무조건 탄생시켜야 한다. 모든 역량을 여기다 집중한다. 다음 공동위원회를 탄생시켜야 된다. 공동위원회와 부속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리산가족문제, 고령자문제요, 체육문제요, 뭐 바쁜 것들이 다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에서 순서대로 토론된다, 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 접촉할 때 거기다가 리산자가족문제 같이 토론하라, 이걸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속합의서 합의해 놓고 시간 있으면 합시다. 위원접촉에서도 부속합의서 다해 놓고, 공동위원회 합의서 다해 놓고, 시간 있으면 그때는 토론할 수 있다...

남(임동원) : 그러면 위원접촉에서는 이번에 저것을 하고 다음에 봐서 검토한다. 예? 현재 당장에는...

북(김정우) : 예, 부속합의서에다 일체 역량을 집중한다.

남(임동원) : 그러니까 이걸 의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일단 검토는 하자.

그러나 우선 우선 순위는 부속합의서에 둔다.

북(김정우) : 부속합의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에...

그렇게 됩시다.

남(임동원) : 정히 귀측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나혼자는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검토 같이 하기로 한다. 우선 순위는 뒤로 가지마는 검토한다. 이렇게 되는거구만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결정합시다. 위원수를 3명으로 하느냐, 4명으로 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3명으로 받겠어요. 3명으로 받는데, 수행원은 편리한대로 하면 어때요?

북(김정우) : 수행원은 4명 합시다, 그쪽 의견대로. 위원수는 우리 의견대로 3명하고 수행원은 4명하고...

남(임동원) : 겨우 1명일? (웃음) 굉장히 인심 많이 쓰는데 (웃음)... 아니 각각 편리한대로 하면 어때요?

북(김정우)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는 서울에서 아침에 떠나 쪽내려오면 돼도, 우리는 이틀씩 걸려요. 한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남(임동원) : 아까 김위원장이 이쪽에서는 4명 하고 그쪽에서는 3명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각각 수행원을 편리한 대로 하면 어때요? 그래 봤댜자 뭐 4~5명, 5~6명 이렇게 되겠죠.

북(김정우) : 아무래도 뭐 또 통일해 나가는 길인데 맞추려면 다 맞추시다.

남(임동원) : 맞춰요? 맞추는게 제일 좋지. (웃음)

북(김정우) : (웃음)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남(임동원) : 그러면 한 5명 할까요?

북(김정우) : 그러면 한 5명 하죠 뭐. 3명, 5명.

남(임동원) : 3명, 5명에 그정도 하면 좋고. 그럼 날짜는 언제 할까요?

북(김정우) : 날짜를 25일로 합시다.

남(임동원) : 3월 25일?

북(김정우) : 예, 수요일 입니다.

남(임동원) : 내주 수요일?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수요일, 총선거 있고 난 다음 날이네.

북(김정우) : 25일이? 총선 때문에?

남(임동원) : 아니 괜찮죠. 우리는 투표만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좋습니다.

북(김정우) : 임선생, 이번에 출마 안합니까?

남(임동원) : 출마하려다가 김선생이 보고 싶어서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어  
요. (웃음)

북(김정우) : 뭐, 복잡한데 출마하지 마시오. 그쪽 일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더구만, 총선이라는게. 물가가 올라간다, 무슨 뭐...

남(임동원) : 그런데 그건 그렇고, 25일경은 대충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결  
정짓기 전에 다음 2차 분과위원회 회의는 언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  
까? 귀측에서 주최할 차례인데...

북(김정우) : 내가 이제, 위원접촉을 먼저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그쪽을 존  
중해서 먼저 불러 보십시오.

남(임동원) : 내가? 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내가 꼭 그대로 맞  
출게.

북(김정우) : 맞추어 보십시오.

남(임동원) : 4월 3일, 금요일.

북(김정우) : 에. 그게 시일이 빠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접촉을  
그저 이렇게 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임동원 위원장 선생도 핵통제 간다  
무슨...

남(임동원) : 그것은 끝났어요. (웃음)

북(김정우) : 아니 그 다음에 또 북남, 북남 다니는 사람 검토하고 다 뒤져  
낸다,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권한 좀 많이 주고 우리  
위원장들은 한달에 한번씩 분과위원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좀 여기다  
충분히 한 다음에 웃는 낯으로 좀 저... 문건 합쳤다 뗐다 하는 것만 할  
수 있게끔... 그쯤 한달 후로, 오늘부터 한달 후로 해서 날짜 한번 불러  
보십시오.

남(임동원) : 김위원장 말이죠. 나도 참 개인적으로는 하도 바빠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건 귀측이 주장하는 것과 조금 상치되  
는 것 같애? 7차 남북고위급회담이 5월 5일에 개최되거든? 그전까지 합  
의를 봐가지고 그때 올려서 합의를 보려면, 5월 5일까지 불과 한달 반  
남았지 않았어요? 한달반 남았는데 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최소한 오늘  
을 포함해서 세번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셋이라는  
숫자가 남북회담에서 중요하더구만요. (웃음) 그래서 4월 3일쯤 한번 하  
고, 그 다음에 5월 5일 이전에 4월말쯤 한번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  
기서 우리가 가서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김정우) : 옳은데... 내 저, 개인사정이 있어요.

남(임동원) : 어디 가시오, 이번에? 나하고 같이 갑시다. (웃음) 독일에서  
만나?

북(김정우) : 아마 그쪽에서 늘 다니던데 나도 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 그런데 이젠 내가 전문 대화사업에 나온 사람은 아닌거고, 난 나대로  
겸직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종의 탄마무리 있어서 그러는  
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위원들한테다가 권한 주어서 위원들이 거저 싹다 해결해놓고,  
4월 20일쯤, 이제 한달 후니까 만나서 그 다음에 합의한 내용중에서 좀  
바로 잡을 것만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하면 된다. 나는 그저 위원들이 다  
이문제를 합의해 나가게 하자, 이거지 뭐. 다 이게 무슨 준비된 사람들  
인데...

남(임동원) : 나도 김위원장하고 같은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인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꼭 그렇게 안되더라고. 그러니 세번을 해야  
될 거라고, 오늘 포함해서. 그렇게 잡아 보라고.

북(김정우) : 임선생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또 그통에 바싹 세번을... (웃  
음)위원접촉을 3월 25일날 하면, 4월 3일까지 몇번 못 만나. 괜히 또 앉  
아서... 나 임선생 마주 앉아서 뭐 회담하는 것 좋은데... 보고도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나도 좀 또 일감이 있는데...

남(임동원) : 언제 오셔? 언제부터 언제갔다 언제와요? 뭐 장소는 그만두  
고, 날짜가? 그것을 피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북(김정우) : 4월중순에 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와서 요해를 하고...

남(임동원) : 내가 뭐 좀 도와 줄 것 없겠어요, 같이? (웃음)

북(김정우) : 내가 알리지요, 예.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알릴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오.

남(김인호) : 바깥에 가신다면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는데요. (웃음)

남(임동원) : 대외경제조정실장, 아마 하고 있는 일이 같은 분야일 거예요.

북(김정우) : ... 앞으로 그 분야도 협력합시다.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게 돼 있는데.

남(임동원) : 두분이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거고.

북(김정우) : 4월 중순 이후 한번해서 좀 지적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뭐... 누구 말마따나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하려면 합시다.

남(임동원) : 4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속 위원접촉을 여러번 가져가지고 문제를 다 다루자?

북(김정우) : 그래요. 그쪽에서 그것 좀 불러 보세요.

남(임동원) : 그러면 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 , 4월 중순이라는게 언제를 말하는지,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북(김정우) : 내가 중순에 오니까, 와서 또 우리 4월 15일이면 우리 주석님 탄생하신 80돌 명절도 끼었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좀, 그사이 위원들 좀, 그 다음에 2차부터 고위급회담 전에는 뭐 매일 하려면 매일하고 여가와 앉았던 길에 올라 안가고 하려면 하고, 좌우간 합시다.

남(임동원) : 그러면, 우리 김위원장께서 대외사업 때문에 그리한다며는 존중해 주어야 되겠지요? 항상 난 상대가 있다는 걸 의식합니다. 존중해서 하는데... 4월 17일에 하죠. 그래 가지고, 만일 모든 것이 타결되면 다행이지만 타결 안될 때는, 위원장이 나서서 조정하여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더 모여야 돼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그때는 모여야 된다 하는 애깁니다. 그것을 예견하여야 됩니다. 안하게 될 정도로 순조롭게 되면 다행이지만...



북(김정우) : 한 이틀 조금 더 연기를 하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7일까지 휴식이라...

남(임동원) : 이틀 연기하면 일요일인데...

북(김정우) : 일요일날?

남(임동원) : 4월 18일, 토요일에 하지, 그럼.

북(김정우) : 예, 그렇게 합시다. 18일.

남(임동원) : 아니 뭐... 김위원장이 하자는데로 전부 하누만. (웃음)

북(김정우) : 그게 늘 좋습니다. 남한테 존경을 받고, 예.

남(임동원) : 그러면 위원접촉 장소와 시간을 이제 정하십시오. 3월 25일, 좋습니다.

북(김정우) :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남(임동원) : 중립국 감독위원회... 좋죠. 이날 다른 사정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있으면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연락하면 되니까, 그게 피차간에 맞지. 10시에 할까요?

북(김정우) : 10시로 합시다.

남(임동원) : 명단은 그전에 며칠전에 서로 통보해주면 되도록.

북(김정우) : 3일전에 전화로 통보하기로 하고.

남(임동원) : 3일전 전화통보?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그래 가지고, 4월 18일 만나기 전까지 여러번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겠죠, 예?

북(김정우) : 예. 그리고 전적으로, 위원장 전권을 위원들한테 위임하고...

남(임동원) : 하긴 그것도 좋아요.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분권화가 되야지.

북(김정우) : 하, 분권화가 아니고. (웃음)

남(임동원) : (웃음)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북(김정우) : 위원장은 있는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면담을 하기 위해서 대표접촉을 가진다, 위원들.

남(임동원) : 그러면, 오늘...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없으면 세시간 반 가량 걸렸습시다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보도 문제는 이미 공개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북(김정우) : 다른 것이 없죠. ”

남(임동원) : 없죠. 끝마칠까요? 그러면.

북(김정우) : 예. 끝냅시다.

남(임동원) : 여행을 잘 다녀오십시오.

북(김정우) :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 새 좀 위원들이 접촉을 잘 시도해서 좋은 성과 이룩되도록 탄생시킵시다.

남(임동원) :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김정우) : 수고하셨습니다.

<雙方 委員 退場>

